

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- 농림부령 제1373호 (2000. 12. 11) -

농림부는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.

1. 주요골자

가.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함(안 제21조제7항 신설).

나.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(안 제26조·제35조 내지 제37조·제47조·제48조·제51조·제53조 및 제55조).

다. 축산물의 영업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던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되, 신규 영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생교육제도를 개선·보완함(안 제48조)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등)</p> <p>①·②(생 략)</p> <p>③ <u>농림부장관은</u>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는 영업자에게 기술·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④(생 략)</p> <p>제15조(축산물의 위탁검사등)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(생 략)</p> <p>제21조(축산물의 수입신고등)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입신고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농림부장관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,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·도착예정일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농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---</p> <p>---</p> <p>---</p> <p>---</p> <p>---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축산물의 위탁검사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 료와 함께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축산물의 수입신고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(이하 "검역 원장"이라 한다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1.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(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검역원장
2. ~ 4. (생 략) ②(생 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.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(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.	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검역원장 ④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.
1.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	
2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	
3.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물	
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물 수입신고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	⑤검역원장은 영 제18조의2제2호의 규정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<u>농림부장관은</u>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 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.</p>	<p>⑥ <u>검역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2조(수입축산물의 통관등) ① <u>농림부장관은</u>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증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·가열·용도제한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22조(수입축산물의 통관등) ① <u>검역원장</u>----- -----.</p>
<p>②(생 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영업장의 출입·검사·수거)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·검사·수거는 <u>농림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가 <u>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에 실시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·③(생 략)	제25조(영업장의 출입·검사·수거) ① <u>검역원장</u> <u>공중위생</u> 또는 <u>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②·③(현행과 같음)
제26조(<u>축산물등</u> 의 수거·검사등)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<u>축산물등</u> 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. ②검사원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축산물등</u> 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축산물등</u> 을 수거한 검사원은 그 수거한 <u>축산물등</u> 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 <u>축산물위생검사기관</u> 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④ <u>농림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<u>축산물등</u> 의 수거·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	제26조(<u>축산물</u> 의 수거·검사등) ① ②----- ③----- ④ <u>검역원장</u> <u>축산물</u>
제27조(<u>축산물위생검사기관</u> 의 지정)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농림부장관</u> 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<u>축산물위생검사</u> 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<u>축산물</u>	제27조(<u>축산물위생검사기관</u> 의 지정) ① <u>검역원장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기타 <u>농림부장관이</u>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</p> <p>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)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, 검사업무에 종사하는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을 첨부하여 <u>농림부장관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미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②농림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농림부장관</u>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제30조(영업허가의 신청등) ①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<u>검역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<u>검역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8조(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검역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0조(영업허가의 신청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(생 략)</p> <p>2.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의 제조방법 <u>설명서(축산물가공업에 한한다)</u>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35조(영업의 신고등)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축산물운반업</u> · <u>축산물판매업</u> 또는 <u>용기등제조업</u>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제조·가공하고자 하는 용기·기구·포장 또는 검인용색소</u>(이하 “<u>용기등</u>”이라 한다)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(<u>용기등제조업에 한한다</u>)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36조(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)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동일 영업장안에서 새로운 품목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</u>(<u>용기등제조업에 한한다</u>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영업의 신고등) ①----- -----<u>축산물운반업</u> 또는 <u>축산물판매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품목제조의 보고등)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<u>축산물가공업 및 용기등 제조업</u>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<u>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(식육 가공품·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한 한다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<u>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37조(품목제조의 보고등) ①-----</p> <p>----- <u>축산물가공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허가관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허가관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) <u>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</u>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·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8조(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) <u>허가관청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45조(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)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45조(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비(B)형간염(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 활동성 간염을 제외한다)</p> <p>제47조(위생교육실시기관등) ①법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(이하 “위생교육기관”이라 한다)과 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<u>제3호 및 동조제7호의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 가공업·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이 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: 한국식품개발연구원</u> 3. (생 략) ②(생 략) <p>제48조(교육시간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·축산물보관업·축산물운반업·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: 매년 <u>4시간</u> 2.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: 2년마다 <u>4시간</u> 3. 영 제21조제1항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: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<u>6시간</u> 4. ~ 7. (생 략) 	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47조(위생교육실시기관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3호</u>----- ----- <u>축산물가공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8조(교육시간)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축산물운</u> ----- <u>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</u> <u>하고자 하는 자</u> :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<u>이내에 6시간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8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(제4호 내지 제7호의 자를 제외한다) : 매월 1시간 제49조(교육교재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위생교육실시기관</u> 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(생 략) 제51조(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) ①(생 략)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 · 축산물운반업 · 축산물판매업 및 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. ③(생 략) 제53조(판매등이 허용되는 축산물등)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· 가공 · 사용 · 수입 · 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등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등으로 한다.	<삭 제> 제49조(교육교재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위생교육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 제51조(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축산물판매업</u> -----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 제53조(판매등이 허용되는 축산물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축산물</u> ----- ----- ----- <u>축산물로</u> ----- 1.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,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구격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 2.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, 용기등의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압류등의 절차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<u>축산물등</u> 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<u>축산물등</u>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검사원증을 내보이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②(삭 제)	제55조(압류등의 절차) ①----- ----- <u>축산물</u> ----- <u>축산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